

■ 법률 칼럼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적정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 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치과 임플란트 치료 과정과 기간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성공 가능성으로 치아 수복에 있어서 가장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임플란트 치료는 긴 치료 기간이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 치료 기간을 요하는 이유와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시도들과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크라운 브릿지를 하는 경우 치아 발치 후 약 6주 정도 후면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이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이 임플란트 치료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릿지는 잇몸만 어느 정도 치유되면 제작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잇몸 뼈에 식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뼈의 치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플란트를 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치유 과정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과정이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까지는 사람의 생물학적 상태를 임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변형시킬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후 크라운 제작을 위해서는 3~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턱의 경우는 통상 3개월, 윗턱의 경우 6개월의 치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의 차이는 골밀도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윗턱뼈의 경우 그 밀도가 아래턱뼈와 비교해 성글기 때문에 치유되는 데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 3개월, 6개월로 못 박았냐고 묻는다면 분명한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기간 고찰



을 통해 알려진 바로 최소한 이 기간을 지켜 임플란트 치료를 했을 경우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 기본적인 기간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가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수복될 부위의 상태가 최상의 조건을 가지게 되는 때입니다.

만일 뼈의 양이 부족하여 골 이식술이 필요할 경우 여기에 6~9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식된 골이 기존 골에 잘 유착이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골 유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플란트가 삽입될 경우 실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골 이식술이 임플란트 식립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소 6개월의 치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 1421호에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